

제286회 정례회
성 북 구 의 회

의안
번호 제425호

**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서**

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전문위원 이 병 곤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425 호
-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제 출 일 : 2021. 11. 10.
- 회 부 일 : 2021. 11. 17.

2. 제안이유

조례의 근거 법률인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의 개정으로 조례의 관련 조항 개정과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적용한 문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[시행 2020.12.22.][법률 제17690호]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¹⁾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6조~제7조, 제2장의 제목)

- “공표는” 을 ⇒ “사전적 공개 등은” 으로
- “공표하는” 을 ⇒ “사전적 공개하는” 으로
- 조례 제7조의 제목 “(행정정보의 공표)” 를 ⇒ “(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)” 으로 변경
- 제2장의 제목 “행정정보 공표제도” ⇒ “행정정보의 사전

1) 법률 제17690호에 의거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을 ⇒ 제7조(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)으로 용어 변경

적 공개 등” 으로

나. 상위법인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²⁾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 개정 (안 제11조제2항)

○ “과반수” 를 ⇒ “3분의 2” 로

○ “위촉한다.” 를 ⇒ “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” 로

다. 잘못 기재된 문구 삭제 (제10조)

○ “별표 제3호” 를 ⇒ “별표” 로 정비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의거하여 문구 및 띄어쓰기 등 정비 (안 제3조, 제4조, 제7조, 제8조, 제13조, 제1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1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1. 9. 30. ~ 2021. 10. 20.

라. 비용추계 : 미첨부사유서

마. 각종 영향평가 결과

구분	검토의견	반영 내용
성별 영향 평가	정보공개심의회 구성할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.	제11조(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·운영)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되, 이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<u>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</u>

2) 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정하거나 위촉하되,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,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
5. 검토의견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의거하여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여 기존 조례의 문구와 문맥 등을 이해하기 쉽고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 됨.